

2011. 12. 23.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38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0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4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8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1.28	2011.11.29	2011.12.22	2011.12.22	총무과장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1.28	2011.11.29	2011.12.22	2011.12.22	주민지원과장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2.07	2011.12.07	2011.12.22	2011.12.22	총무과장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12.19	2011.12.19	2011.12.22	2011.12.22	정보통신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2011. 3. 22)됨에 따라 관인에 다양한 서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의 글씨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안 제4조 2항)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응자금 위주로 운영하던 자활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의7,9,10)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5조 ④)
-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③)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업도시 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주덕읍 화곡리, 가금면 용전리, 이류면 영평리·본리)

- 주덕읍 화곡리 6필지 ($62,752\text{m}^2$)를 가금면 용전리에 편입
 - 주덕읍 화곡리 8필지 ($120,092\text{m}^2$)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5필지 ($16,343\text{m}^2$)를 주덕읍 화곡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14필지 ($184,300\text{m}^2$)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54필지 ($236,992\text{m}^2$)를 이류면 완오리에 편입
 - 이류면 완오리 30필지 ($284,389\text{m}^2$)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이류면 영평리 1필지 ($40,962\text{m}^2$)를 가금면 용전리에 편입
 - 이류면 영평리 8필지 ($294,642\text{m}^2$)를 주덕읍 화곡리에 편입
 - 이류면 본리 24필지 ($102,008\text{m}^2$)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 주덕읍(증 $128,141\text{m}^2$), 가금면(감 $333,921\text{m}^2$), 이류면(감 $205,780\text{m}^2$)
- * 알기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분산화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민원 응대절차를 집중·간소화시키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제정,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명칭과 위치 (안 제3조 ~ 제4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기능 (안 제5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 (안 제7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감독(안 제9조)
-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의 취소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고 부칙에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활기금의 용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대여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 제 7호 내지 제10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당해연도 지출한도가 폐지되어 한도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자활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임.

안 제5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3항은 대여자금에 대해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원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존 경계대로 지번주소를 부여할 경우 동일주택과 공장이 2~3개 지번으로 나눠지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변경내용은 주덕읍 화곡리 59번지외 13필지 182,844m² 중 6필지 62,752m²는 가금면 용전리로, 8필지 120,092m²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하고
가금면 용전리 528번지외 72필지 437,635m² 중 5필지 16,343m²는 주덕읍 화곡리로, 14필지 184,300m²는 이류면 영평리로, 54필지 236,992m²는 이류면 완오리에 편입하며
이류면 영평리 6번지외 8필지 335,604m² 중 8필지 294,642m²는 주덕읍 화곡리로, 1필지 40,962m²는 가금면 용전리로 편입함.
이류면 완오리 227번지외 29필지 284,389m²와 이류면 본리 81번지외 23필지 102,008m²는 이류면 영평리로 편입하는 사항임.
-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제1조부터 제4조에서 목적, 정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콜센터의 기능 및 시설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민원상담원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의 전화 응대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의 민원 추세가 단순민원 보다는 복합민원, 행정적·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원들에 대한 반복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 : 2011년 현재 2,888만원이 조성됨.

▶질의 : 지금 대여실적은?

○답변 : 2008년 성실주택이라는 공동체에서 사업비 7,000만원을 읍자 받고, 2010년 창업자금 1건에 3,000만원 지원했음.

▶질의 : 지금까지 이자불입은 잘되고 있나?

○답변 : 저소득자에게 읍자하는 것이라 회수 비중이 낮음.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인근주민의 동의나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 주민이 살고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 : 콜센터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없는가?

○답변 : 담당부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삭제를 한 것임.

▶질의 : 충주지역에서 120번으로 전화하면 충주시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답변 : 방법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을 해결하는 데 예산이 수반됨.

▶질의 : 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나?

○답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운영하며 민원분쟁소지를 대비하기 위함.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원안가결 |